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방 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등의 소유 및 경영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변경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시설 변경의 범위를 축소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사업 허가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을 운용하거나 지역정보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한 서류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 등의 소유 및 경영에 관한 제한 완화(안 제4조)

- 1)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경영할 수 있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범위를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까지에서 '100분의 5'까지로 완화함.
-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소유 및 경영 제한을 폐지함.
- 3) 위성방송사업자 상호 간 소유 및 경영 제한을 폐지함.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간 소유 및 겸영이 허용되는 범위를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이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까지에서 '100분의 49'까지로 완화함.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변경허가 대상 범위 완화(안 제15조제1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주전송장치의 설치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함.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나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16조제1항)

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의 유효기간과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라.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과 운용에 관한 규제를 폐지(안 제53조제1항)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전체 운용채널 수 등 채널 구성 및 운용 관련 의무를 폐지함

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서류제출 의무 폐지(안 제53조제3항, 현행 제55조제2항 삭제)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직접사

용채널운용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폐지함.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정보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한 지역채널운용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폐지함.

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송신 가능한 방송프로그램 범위 확대(안 제55조제3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에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공직선거에 관한 프로그램을 포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2. 28. ~ 2022. 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과 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이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9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제8항 후단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방송구역의”를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으로, “변경(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전송장치 설치장소의 이전을 포함한다)”을 “변경”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고”를 “않으며”로, “구성·운용하여야”를 “구성·운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제2항제1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사용하는 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제3항 각 호의 구분”을 “그 소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

로 한다.

5.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공직선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방송프로그램
- 가. 「공직선거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경력방송
- 나. 「공직선거법」 제82조·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에 따른 대담·토론회·정책토론회 관련 방송프로그램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① ~ ⑤ (생략) ⑥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및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100분의 3(100분의 3으로 산정한 사업자수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6개로 한다)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경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2.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및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경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⑦법 제8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4. 삭제 5. 특정 위성방송사업자가 다른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6. 특정 위성방송사업자가 다른 위성방송사업자의 위성방송사업을 2개 이상 경영하는 경우 ⑧법 제8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과 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총액 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	⑦----- 대통령령으로 ----- -----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⑧법 제8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과 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이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9를 초과하	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은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생략) 제15조(변경허가 등)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방송구역의 변경을 초래하는 주전송장치의 변경(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전송장치 설치장소의 이전을 포함한다) 2. (생략)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 ⑦ (생략)	는 경우를 말한다. ----- ----- ----- ----- ----- 않는다. ⑨ (현행과 같음) 제15조(변경허가 등) ----- ----- 대통령령으로 ----- ----- ----- 변경-----. 1.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 ----- 변경 2. (현행과 같음)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	--	---	--

운용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고, 지역채널운용계획서에 따라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지역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5. 기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과학기술

③-----

--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5.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공직선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방송 프로그램

가. 「공직선거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경력방송

나. 「공직선거법」 제82조·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에 따른 대담·토론회·정책토론회 관련 방송프로그램

6. 그 밖에 -----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6541